유일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제정 2023. 12. 28. 개정 2024. 7. 17.

제1조(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 ① 교육과정위원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해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심의한다.
 - 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 나.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다. 교수·학습 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 라. 교과의 대체 이수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②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의사 결정에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조(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 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으로, 위원은 다음 각 항의 자를 당연직으로 구성하다.
 - 가. 교육과정부장
 - 나. 교무부장
 - 다. 교과부장
 - 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년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두어, 필요에 따라 각 조직의 대표 혹은 전체를 위원회의 협의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마.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시에는 고교학점제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두어 협의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3조(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 ① 교육과정 편성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계획 수립
 - 나. 진로 설계를 위한 학업·진로 검사 실시
 - 다. 진로 및 학업 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라. 학생 대상 과목 선택 수요조사
 - 마. 학교 교육과정 확정
 - 바. 과목 수강 신청 및 조정
- 사. 수업 운영 계획 수립
- 아. 수업 운영 및 수강 신청 변경
- ② 교육과정부장 및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교사는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③ 학급 담임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는 다음의 각 항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진로 설계를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 나. 대학 계열·학과별 이수 권장 과목
-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 라. 대학입학전형계획
- 마.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 ④ 교육과정위원회는 교과별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과목의 이수 시기 및 단위를 심의한다.
- 가. 보통교과의 선택과목은 전 과목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없거나 학교의 여건으로 인해 편성이 어려운 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편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나. 보통교과 이외의 과목은 학생의 이수 희망이 있는 경우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 다. 교육과정 편성 시 과목의 성격과 위계성 등을 고려하며, 이수 시기와 단위는 교과별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이 어려운 과목은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이수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 마. 과목의 교육과정 편성과 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은 분리하여 운영한다. 과목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관련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 ⑤ 편성이 완료된 교육과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심의 통과 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안내한다.
- ⑥ 본 규정 이외에 관한 사항은 상급기관의 지침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다.

제4조(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 ①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안의 확정과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의 결정을 위한 수요 조사의 시기 와 방법은 다음 각 항의 요인을 고려해 결정한다.
 - 가. 수요 조사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가 완료된 후에 시행한다.
 - 나. 최초의 수요 조사는 1학기 내에 실시하고 총 수요조사는 학년도 내에 2회 이상 실시하며, 수 강 신청과 교과서 주문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시기를 결정한다.
 - 다. 수요 조사의 결과는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공개 할 수 있다.
 - 라. 수요 조사 결과와 교과별 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을 결정한다.
 - 마. 수요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와 대상 학년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고, 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안을 교육과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

- ① 수강 신청 및 수업 운영계획의 수립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가. 과목선택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나. 과목선택 수요 조사
- 다.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선택과목 개설
- 라. 수강 신청
- 마. 수강 신청 조정: 미개설 과목, 진로 변경 등의 사유
- 바. 최종 분반 편성 및 수업시간표 작성
- ② 학급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는 학생의 진로 희망과 학교의 여건 등을 바탕 으로 학생과 수강 신청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 ③ 상담이 완료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수강 신청 사이트를 통해 수강 신청을 진행한다.
- ④ 수강 신청 완료 후 업무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과목별 신청현황 통계자료 및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설 가능 과목 목록을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⑤ 수강 신청 시 학기 단위로 운영되는 과목의 경우, 교원 정원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학기당 수강 인원의 제한을 둘 수 있으며, 해당 과목의 수강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결정한다. 단, 학년제로 운 영되는 과목의 경우에도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목은 인원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⑥ 수강 신청이 종료된 이후 과목별 수강 신청 결과(과목별 인원)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 신청 결과 공개는 수강 신청 조정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한다.
- ① 수강 신청이 종료된 이후 수업일수 기준 <u>10일</u>의 조정 기간을 두어 변경을 희망하거나 미개설 예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가. 수업 시간표나 학급 편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나. 새로운 과목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 다. 진로·진학 및 학업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
- 라. 단순한 교우 관계, 교사에 대한 선호에 따른 경우
- 마. 위의 ⑤항에서 설정한 인원 제한을 초과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 바. 두 학기 이상 개설되는 과목의 수강 학기를 변경하는 경우
- 사. 기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⑧ <u>수강 신청 조정 기간이 종료된 후</u>, 학년 또는 학기가 시작된 개학일로부터 수업일수 기준 10일 이내에 수강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택 과목 교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⑨ 수강 신청 조정 및 변경 기간 이외에 임의로 수강 과목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동의 및 확인을 받아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목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⑩ 학년 단위로 개설·운영하는 과목의 경우, 2학기 수강 과목의 변경을 제한하나 학생 희망 진로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동의 및 확인을 받아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목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⑩ 수강 신청을 변경하거나 과목 맞교환을 할 경우 [별첨]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과목 개설 및 분반에 관한 사항)

- ① 과목의 개설 및 분반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과목의 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신청 인원은 15명으로 한다. 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되지 못한 과목의 수강생들은 상담을 통해 이수 과목을 조정하거나,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나. 과목 분반을 위한 최소인원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과목에 따라 교사 요인을 협의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③ 수강 신청이 완료된 후 개설 및 미개설 과목, 과목별 수강 인원 및 분반 수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제7조(수업시간표 편성에 관한 사항)

- ① 수업시간표는 교사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학교 관리자, 교육과정부장, 각 교과부장과 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② 수업 운영계획은 교원 정원과 인사 요인이 확정된 학년 말에 수립한다.
- ③ 학급 편성과 분반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동 수업을 실시한다.
- ④ 이동 수업의 담당 교원의 결강 사유 발생에 따른 보강 수업은 수요일 7교시(공강)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강 시간에 보강 수업 운영이 어려울 경우, 수업 운영계획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방과 후나 주말 등의 시간을 활용해 보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점제의 시행 등을 통해 발생하는 공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에 근거해 운영한다.
- ⑥ 교사의 결강에 의한 공강 발생 시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결보강 처리 기준에 따른다.

부칙

- 가. 본 규정은 전체 교사 대상 의견수렴과 교과별 협의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통해 개정한다.
- 나. 본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0학년도 교육과정 수강 신청 변경에 따른

수강신청 변경 희망서

※ 정해진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로 운영상 문제나 작성 내용에 따라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학번:	이름:	(서명)
현 선택 과목	변경하고자 하는 과목	
희망 진로	희망 대학 및 학과	
과목 변경 사유 (구체적 500자 이상) <u>자필 작성</u>		
변경 과목 학습 계획 (구체적 500자 이상) <u>자필 작성</u>		

200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선택 과목 교환 희망서

인적 사항 및 교환 과목	학생 ①	학번		이름	
		교환 과목명			
	की स्था 🚳	학번		이름	
	학생 ②	교환 과목명			
구분	<u>.</u>		교횐	사유	
학생 (100자 니 자필 작	내외				
학생 (100자 니 자필 작	내외				
		위와	같은 사유로 과목을 교 20 년 월		
		학생 ①:	(서명)	학생 (②: (서명)

담임 ②:

(서명)

(서명)

담임 ①:

2000학년도 교육과정 과목 선택 교환에 따른

담임교사 상담 확인서

대상 학생	학번:
पाक वक्ष	이름:
-1. D	신청 과목(변경 전)
平寺	변경 과목(변경 후)

희망 진로	희망 학과	
-------	-------	--

담임교사 상담 사유(학생 자필 100자 이상 작성)

면담 내용(면담 일시 및 시간 포함)

위와 같이 학생 과목 변경 사유를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른 면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담임교사: (서명)

[별첨 4]

2000학년도 교육과정 과목 선택 변경(교환)에 따른

학부모 의견 및 동의서

대사 하새	진.
110 70	름:
→1 🗇	신청 과목(변경 전)
47:	변경 과목(변경 후)

()학년 ()반	()	번 ()의	학부모 ()(은)는	본인	자녀의	수강신청
변경에	동의하며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디	- .			

과목 변경에 대한 학부모 의견

※ 단, 학생 및 학부모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나 교육<u>과정 운영 사정에 의해 일부 제한</u> 될 수 있습니다.

제한 가능한 내용: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내용으로 반(분반포함), 선택과목, 교과서 등

위와 같이 수강신청 변경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학부모: (서명)